

[‘낙태죄’ 정부입법예고안 규탄 성명]

**여전히 임신중지를
‘처벌’하겠다는 국가를
강력히 규탄한다**

**여성 인권 퇴행을 예고하는
<‘낙태죄’ 정부 입법 예고안>을
당장 철회하라**

[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 규탄 성명]

10월 7일 오늘 정부가 낙태죄 정부 입법 예고안(이하 '정부안')을 발표했다. 내용은 매우 참담하다. **기존의 처벌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, 사문화된 조항을 오히려 부활시키고 있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 심각한 퇴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.**

우리는 이에 대한 **강력한 규탄**과 함께 **<정부안의 철회>**와 **<형법 상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>**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.

[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 규탄 성명]

정부안은 헌법재판소가 ‘헌법에 위배된다’고 주문으로 명시한 [형법 제269조 여성처벌조항], [형법 제270조 의사처벌조항]을 그대로 두고, <모자보건법>에 따로 떨어져 있던 예외적 허용조항을 <형법>으로 가져왔다.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‘헌법재판소 역시 처벌의 적합성을 인정했다’고 설명하고 있으나,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.

- ▲첫째,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(主文)—“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상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”—에만 미친다는 점에서 **위헌적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**는 결정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.
- ▲둘째, 국가와 우리 사회가 모든 방법과 노력을 강구한 끝에 ‘최후의 수단’이 되어야 할 <형사적 처벌>을 가장 앞에 내세워 **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**하고, ‘임신중지의 비범죄화에 대한 **국가의 의지 없음**’을 보여주고 있다.
- ▲셋째, 학업, 생계, 가족계획 등의 주체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외면하고, 이를 국가가 통제하는 **구시대적 형벌 프레임**을 유지하여 **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전락**시켰다.

[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 규탄 성명]

“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.”

<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>를 이야기하며
시민들과 함께 무수히 외쳤던 구호이자 요구이다.

**2020년,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을 자신의 삶에
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, 건강권,
평등권을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 보고 있는가?**

‘낙태죄’라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법이
유지되는 한, 여성은 ‘이등시민’에 그칠 수밖에
없다. **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.**

**정부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고,
형법 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.**

2020. 10. 7.
한국여성민우회